

「2026년 제주지사 폐농약봉지 소각처리 운송용역」 과업내용서

1. 과업명 : 2026년 제주지사 폐농약봉지 위탁 소각처리 운송용역

2. 과업의 목적

- 농사 후 수거한 폐농약봉지를 위탁 소각처리에 따른 운송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 대상품

- 제주수거사업소에 보관하고 있는 폐농약봉지

※ 운송용역 수행업체는 필히 운송물품의 상태 및 상·하차 지역에 대한 사업환경을 파악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과업대상 물품 보관장소

- 제주수거사업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670-28)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04.까지

5. 과업수량 : 폐농약봉지 81,000kg

- 공단 운송계획 및 예산범위 내에서 과업 수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수량 증가시 상호 협의하여 계약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6. 과업내용

- 과업대상품을 공단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송(상·하차 포함) 하여야 한다.

상차지	하차지	운송물량
제주 수거사업소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670-28)	(주)엔아이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해로 259(소룡동))	81톤

- 상·하차 작업시간(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상차시간: 09:00~17:00
 - 하차시간: 하차지 업체 처리시설의 요구 조건으로 하차작업
- 과업대상 물품은 마대 등에 포장 보관되어 있으나 일부 마대가 손상되었을 경우 용이한 상차 작업을 위한 포장작업 등을 수행 하여야 한다.

7. 위탁운송비 지급

- "계약상대자"는 운송물량에 대하여 매월 말 기준 운송단가(원/kg)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확인 날인하여 제출
 - 단, 계약기간 마지막 월은 그 종료일을 마감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송비를 "한국환경공단"에 청구하고, "한국환경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8. 계량 방식

- 운송 물량에 대한 계량은 "한국환경공단"의 계량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한국환경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량대나 공인계량소를 이용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제한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의 사전 승인없이 하도급 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한다.

10.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폐농약봉지를 소각 처리 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며, 운송 차량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수집·운반증(영농폐기물 포함)을 보유한 계약

상대자의 운송 차량이어야 하며, 그 외는 운송할 수 없다. 상·하차작업을 위한 장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작업을 주관하며, 계량은 상차지 “공단” 계량대를 이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폐농약봉지 상하차 작업시 안전확보를 위한 별도의 작업 보조원을 배치하여 2인1조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1.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한국환경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정부정책 변화 및 법규의 개정이 있을 시 계약 내용에 반영토록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정부정책의 변화로 사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 계약이행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상호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 기타 부득이 한 경우

12. 책임의 한계

- “계약상대자”는 폐농약봉지를 인수받은 후 관련 법규에 따라 운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타 이유로 과업수행을 못하게 될 경우 그 사실을 “한국환경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을 위한 “한국환경공단”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한국환경공단”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13. 기타사항

- 과업 요구사항, 문맥상 해석 등에 있어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간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관련법규 또는 유권해석에 따른다.
- 본 과업내용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공단”이 동 계약의 수행확인을 위하여 관련서류 요청, 현지방문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요

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완료 후 비정상적인 사업비 집행이 확인 될 경우 발주자는 해당 사업비에 대한 환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 수행 중 상호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한다.

○ "한국환경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상급기관이나 감독기관의 자료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다음의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

1)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부.

2)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격 기준: C등급(60점 이상)(작업별 기준득점 제시)

3) 제출부서 및 평가 관련 문의: 제주지사 자원순환지원부

○작업의 위험정보

- 위험요인

구분	작업내용	비고
차량 유도	• 사업소 진출입차량 안전유도, 안전모·안전화 착용 여부 점검 등	
계량·검수	• 영농폐기물(폐농약용기류) 일반 계량 및 검수 업무	
시설관리	• 사업소 내 시설물 관리 업무(화재예방 등) • 사업소 출입자 관리 등 • 사업소 민원발생 시 지사 보고업무 및 민원처리 지원 업무 • 사업소 재고 관리 업무	

- 안전대책

연번	안전조치	관련법
1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1~52조
2	적격 수급인 선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3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4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호
5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2호
6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3~4호
7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훈련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5호
8	위생시설 설치 및 이용 협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6호
9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2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11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12	작업장 안전관리	「안전보건규칙」 제3~20조
13	통로의 안전관리	「안전보건규칙」 제21~30조
14	보호구 사용 및 지급관리	「안전보건규칙」 제31~34조
15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안전보건규칙」 제35~41조
16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안전보건규칙」 제38조
17	작업지휘자의 지정	「안전보건규칙」 제39조
18	추락,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42~49조
19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50~53조
20	휴게시설 및 세척시설 설치	「안전보건규칙」 제79조
21	의자 비치 및 수면장소 등 설치	「안전보건규칙」 제80~81조
22	구급용구	「안전보건규칙」 제82조
23	기계의 운전 시작 전 조치	「안전보건규칙」 제89조
24	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안전보건규칙」 제91조
25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안전보건규칙」 제92조
26	기계·기구 또는 설비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안전보건규칙」 제93조
27	작업모 등의 착용	「안전보건규칙」 제94조
28	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안전보건규칙」 제96조
29	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127조
30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245조
31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안전보건규칙」 제649~653조

[별표 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지침

● 안전보건교육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

-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수급인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도급인은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된 위험요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인은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안전보건 점검

- 도급인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안전보건정보 제공

-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등의 협조

-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도급업체의 사업주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 안전보건조치 이행

- 수급인은 사업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의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지도 할 수 있다.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련 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정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도급인은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폐농약용기(농지류)소각처리 운송용역계약 특수조건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와 (주)0000(이하 “계약상대자”이라고 한다)간에 폐농약용기 소각처리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기사항을 정하여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 ① 본 계약은 “공단” 제주지사 제주수거사업소에 보관되어 있는 폐농약용기를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량)

- ① 운송 계약수량은 81톤으로 한다.
- ② 사업수행에 있어서 폐농약용지의 상.하차지별 운송량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합의하에 동일 계약조건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운송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물품의 상태 및 규격)

- ① 운송물품은 영농 후 수거하여 보관되어 있는 폐농약용기를 말한다.

제4조(계량 및 검수)

- ① 운송물품에 대한 계량은 상차지 “공단” 계량대를 사용하며, 공인 계량소 이용 시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으로부터 물품 인수시 계량표에 확인.날인하여 계근표 2부를 받아 1부는 하차지에 인계하며, 1부는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운송물품의 감량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조(물품 운송조건)

- ① 운송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12월04일까지 한다. 단, 계약기간 중 계약 수량을 운송 완료할 시 완료일은 계약만료일로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제시하는 상·하차지 별 폐농약봉지 운송계획에 따라 제시한 도착지까지 물품을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물품의 상·하차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운송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경우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상·하차에 소요되는 대기시간 발생시 추가 운송비를 청구할 수 없다.

제6조(물품의 상하차 시간 및 상하차 장소)

상차지	하차지	운송물량
제주수거사업소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670-28)	(주)엔아이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해로 259(소룡동))	81톤

- ① “공단”의 물품 상차시간 09:00~17:00, 반입지(하차지)의 반입 및 하차시간은 업체(처리시설)의 요구 조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필요한 때는 “공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반입지(하차지)의 여건 등을 파악하여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의 운반)

- ① “계약상대자”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영농폐기물 포함)을 보유한 차량으로 물품 운반을 하여야 하며, 하도급 및 타인의 차량으로 운반하여서는 안된다.
- ②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반 시 흘날리거나 빗물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투명 덮개(천막 등)를 씌워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하차지에 물품의 반입 또는 하역 시 체반 규정 준수 및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지장이나 불편 등이 없어야 한다.

제8조(운송비 청구 및 지급)

- ① 운송비 비용정산을 위한 계량은 상차지 “공단” 계량대를 이용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말 또는 월중 운송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운송비를 청구하며,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최종도착지에 물품을 인계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한 운송비 청구에 의해 운송비를 지급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운송비를 매월말 또는 운송종료 시점을 기준하여 10일 이내에 청구하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관련서류 등을 검토 후 운송량에 대한 운송비를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제9조(운송비 조정)

-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정에 의해 물품의 상.하차지별 운송물량 변경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pm 10\%$ 이내 상.하차지별 운송계획 변경(운송량 증감)은 최초 계약금액과 동일한 단가로 운송비를 조정 정산할 수 있다.

제10조(계약해지)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정부정책의 변화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 나. 계약이행을 위하여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상호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 다. “계약상대자”가 물품의 미운송으로 “공단”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 라.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②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사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제시하는 물품 운송계획량을 기일 이내에 운송하

지 않을 경우 미운송 물량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5조에 의거하여 지체상금을 “공단”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공단”의 사유 및 천재지변 등(구제역 발생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미운송 물량은 제외한다.

제12조(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보안유지)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지득한 일체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계약보증금)

-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 및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액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50조에 의거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공단”에게 계약체결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종료일+30일로 한다.
-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명백히 계약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증금은 “공단”에 귀속한다.

제15조(안전관리)

① 안전보건교육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안전보건교육 실적제출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가.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발주처”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나. “발주처”는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된 위험요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정기회의 개최 시 참석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 점검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발주처”와 분기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 “발주처”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안전보건조치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지도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해야하며,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는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련 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정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처”의 정보체계 운영과 대피 방법 등의 훈련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및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 할 수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작성하고 대금 청구 시 “발주처”에게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명세서를 제출하며, 목적 외 사용 시 계약금액 감액조정·반환한다.

제16조(행정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이를 “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 ① 본 계약특수조건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공단”이 동 계약의 수행확인을 위하여 관련서류 요청, 현지방문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추진에 있어서 상호협력 한다.
- ③ 폐농약용기(봉지류)소각처리 운송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④ 운송비는 물품의 운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운송 도중 물품의 훼손, 도난 시 해당 운송차량의 계근량에 따라 해당 상차지 실거래 가격으로 “공단”에게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⑥ 정부의 폐기물정책변화 및 “공단”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울 시 “계약상대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 ⑦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른 인.허가 혹은 신고 사본,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차량장비 보유관련 서류 등 필요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 ⑧ 사업수행을 위하여 상.하차지별, 운송계획 변경 시에는 운송거리, 운송물량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여 톤당 운송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